## 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세무사법위반

[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9. 13. 2017고단5681, 2018고단1277(병합), 2018고단1586(병합), 2018고단2158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2인

【검 사】이대성, 김태헌(기소), 손정아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양세헌 외 1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,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